

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

보건복지부는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·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『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

2018. 2. 9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1. 사업추진 기본방향

- 국정과제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현안과 관련된 사업 우선 선정
 - 일회성 행사, 연찬회 및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선정 제외
 -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
 - 독거노인 돌봄, 치매관리, 노인일자리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
-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확보
 - 내·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수행기관 선정

- 연 초 설명회를 통해 예산 집행지침 및 평가지표 등 설명
 - 보조금 부정사용 시 환수 조치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 - 일정비율의 자부담 의무(신청 국고보조금의 10% 이상) 설정
 - * 자부담 10% : 기점 1점, 자부담 10%초과~30%미만 : $1+2 \times (\text{자부담비율} \% / 30\%)$ 점, 기점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절사, 자부담 30%이상 : 기점 3점(자부담 미이행 시 다음연도 선정 제외)
-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및 중복·계속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
-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 적극 발굴
 - 기존 예산사업과 유사·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되, 기존 사업에서 수행하지 않는 특화된 사업의 경우에만 검토
 - 기존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,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및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신중히 결정
-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및 정보공유 강화
- 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1차(8월), 2차(11월) 중간점검 실시
 -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사전교육과 사업운영 지원
 - 사업집행의 효율성 점검과 함께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, 당해 연도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
 - 중간점검결과 및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강화 유도
- 사업 평가지표의 내실화 및 공익적 가치 반영
- 노인복지의 기여도, 인권보호, 안전한 생활환경, 건강생활, 사회적 약자에 기회 제공 등 공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로 구체화
- 전년도 사업평가 반영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수행 유도
-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기준 미달(60점 미만)인 단체는 사업과제를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 참여 배제

2. 지원대상 사업

□ 독거·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

- 지역사회 중심의 독거노인 돌봄 체계 구축(Community Care)
- 노인 학대 예방 등 학대 피해노인 돌봄 및 지원

□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

- 노년기 질환 예방,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

□ 노인 여가활성화 사업

- 노인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
- 경로당, 노인교실, 노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
- 자원봉사 및 노인일자리 등 노년기 사회참여 확대

□ 노인권의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

- 노인 인권의 개념, 국제적 기준, 교육프로그램 개발
- 노년의 성 권리 회복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
-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(예: 금융사기예방, 성년후견지원 등)

□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

-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
- 부모공경 등 인성함양,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※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, 노인의 날 행사 등 성격상 공모가 적절하지 못한 사업은 필요시 비공모 지정과제로 실시

<보조금 지원제외 과제>

- 중복지원 신청 과제

-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·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

-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

-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,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되는 과제
-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·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

3. 사업대상기관 및 응모방법

(1) 사업대상기관

- 노인복지 및 효행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
 - 신규 사업의 경우 관련분야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, 전문가 집단 등
 - 민법상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법인격이 있는 자활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
- *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

(2) 사업계획서 작성방법

- '지원 대상사업'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
- 예산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
 -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
 - 일정시기에 보조금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
 - 국고보조금 사용 금지 항목
 - *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관리비(전기, 전화, 수도, 임대료 등 운영비)
 - * 건물/토지 임대 및 유지비, 차량 구입 및 유지비
 - * 컴퓨터 구입 및 유지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비

(3) 응모방법

-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(별첨 1) 1부
 - * 사업신청서는 우편과 함께 반드시 E-mail로 파일 송부(active90@korea.kr)
-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7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
- 제출기한 : 2018. 2. 28. (수) (마감일 소인에 한하여 유효)

4.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

(1) 선정절차

□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(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포함)

- (구성)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
 -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, 예산·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
 - 위원 중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,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

□ 심사방법

- (1차 서류심사)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
- (2차 면접심사)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

(2) 보조금 신청

-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업무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보조금 신청(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)

*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

(3) 사업선정단체 이행조건

- 이행보증보험 제출
 - 제출목적 : 보조금사업 이행 담보 및 국가 손해 배상
 - 보험계약자 : 지원받는 단체
 - 피보험자 : 보건복지부

- 보험가입금액 :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
- 보험기간 : 사업 승인 일부터 '18.12.31.까지
- 보증내용 :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보증

○ 보조금관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

- 지원사업별 보조금관리 별도 통장 개설
-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: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

[별첨 1] 사업계획 신청서 양식

2018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				
사업명				
신청기관	기관명		기관장	
	설립연도		설립형태	
	주 소		전 화	
	E-mail		전 송	
	사업자 등록번호			
사업부서	부서명			
	책임자 성명		전 화	
			전 송	
<p>당 기관은 2018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국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18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신청기관의 장 _____ 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</p>				
<p><사업계획서 신청시 구비서류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서 1부 2.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 				

<요약문>

사 업 과제명				
사업책임자 (소속기관)				
사 업 비	총 계	국고보조금	자체예산	기 타
총사업기간	2018. . . - . . . (총 개월)			

사업내용 요약

I. 기관 현황 등

1. 개요

가. 기관 설립 배경, 철학(이념)

*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, 설립근거, 기관의 철학(이념)

나. 연혁

년 월 일	내 용

다. 사업내용

* 정관상의 사업 내용외에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

2. 조직 및 인력 현황

가.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

*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,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

나.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

다. 재무구조 및 재원조달 방법

3.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

*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기술(최근 5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)

* 응모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도 기술

II. 2018년도 사업계획

사업 1: *사업명(사업이 여러개 인 경우에는 사업별로 작성)*

(*기존 사업의 경우 그간의 추진실적 및 사업량 등을 명확하게 기술,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성과지표 및 사업량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)

1.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

- 가.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
- 나. 사업의 목적 및 목표

2. 사업 내용 및 범위

가. 사업대상자

*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, 사업 대상자 선정 근거, 선정방법, 사업량 등을 기술

나. 사업 내용 및 범위

*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, 홍보사업의 경우 시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

다. 사업추진 방법

* 사업자료 수집, 전문가 확보,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방법 등을 서술

*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, 일정별 달성목표, 추진전략 등 기술

라.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

* 만족도 조사, 홍보물 접촉율 등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(자체평가)에 대해 기술

마.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바.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

*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

III. 추진일정 등

1. 사업수행 인력편성(서식 1)
2. 사업추진 일정(서식 2)
3. 사업비 산출내역(서식 3)

<서 식 3>

국고보조금 분기별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)

사업내용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
자부담 분기별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)

사업내용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
<서 식 4>

사업비 산출내역(예시)

(단위: 천원)

비목 번호	비 목 명	산출내역	총계 (A+B)	보조금 (A)	자부담 (B)	비율(%)
1	인건비					
2	교재·홍보물 등 인쇄비					
3	도서 및 교육자료구입비					
4	여비					
5	조사비					
6	회의비					
7	임차료					
8						
9						
10	기 타					
사 업 비 총 액						

주1) 사업에 따라 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

주2)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주3) 사업비 산정내역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사업비 산출에 유의

주4)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10% 이상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, 자부담 10%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

* 자부담 10% : 가점 1점, 자부담 10%초과~30%미만 : 1+2×(자부담비율% / 30%)점, 가점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절사, 자부담 30%이상 : 가점 3점(자부담 미이행 시 다음연도 선정 제외)

※ 사업비 산출기준

-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(합산)시 1,000원 미만은 절사
-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